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869
----------	-------

발의연월일 : 2025. 6. 16.

발 의 자 : 박충권 · 서천호 · 김정재
김성원 · 김태호 · 박준태
엄태영 · 우재준 · 신성범
이인선 · 박성훈 · 조지연
김민전 · 서일준 · 조은희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으로 사고에 대한 보고·조사와 이에 따른 연구실 사용제한 등 조치 및 연구활동 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신체적 부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외상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회복 지원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연구실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심리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① 연구실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마목에 따른 의료기관 중 시설,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방법·절차 및 업무와 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의 기준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및 심리적 치료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적 피해에 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연구실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7조의2(심리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① 연구실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받을 수 있다.</u> <u>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마목에 따른 의료기관 중 시설,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u> <u>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방법·절차 및 업무와 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의 기준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u> <u>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및 심리적 치료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u>

	<u>할 수 있다.</u>
--	----------------